

완도군의회 공고 제2025 - 24호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발 의 자 : 박병수 의원
3.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교육훈련(안 제7조)

○ 소비촉진 등(안 제8조)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8. 21. ~ 2025. 8. 25.(초일불산입 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2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7,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
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도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변함으로
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
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
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⑥ 시장·군수 및 자
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
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
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회를 둔다.